

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 - 34
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4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 개정, 재활용 사업에 관한 교육 및 알기쉬운 법률 용어 정비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·정비하여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자원 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

- 제4조(장려금의 등의 지급) : 상위법(자원재활용법) 조항변경

나.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조항 신설

- 제2조(구청장의 책무) 2항 :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

다. 재활용추진협의회 관련 조례 정비

- 제5조(재활용추진협의회) : 변경(용어정비 및 위원회 연임조항 신설)
- 제5조의 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: 신설

라. 과태료 부과 근거 법규 변경, 기타 맞춤법 수정

- 제7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: 변경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)
- 제8조~제10조 : 삭제
- 제11조(준용규정) : 지방세 징수의 예 →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
- 제12조(과태료의 귀속) :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
되지 않음

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7. 3. 23 ~ 2017. 4. 12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 : 원안 의결
- 바.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사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”으로, 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”를 “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, “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”를 “자원순환을 촉진하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

제3조의 제목 “(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·시행)”을 “(기본계획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7조제

4항에 따라”로, “기본지침서과 관할구역”을 “기본지침과 관할 구역”으로, “수립·시행하여야”를 “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장려금 등의 지급)”을 “(자금 등의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”를 “법 제31조에 따라”로, “시민,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, 보상금 등을 지급”을 “재활용사업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시민”을 “구민”으로, “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(이하 “구 협의회”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회장·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1인”을 “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지 11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회장 및 부회장”을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회장·부회장”을 “위원장·부위원장”으로, “한다”를 “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”를 “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”로, “회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·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과태료 부과 · 징수 등)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· 징수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제8조부터 제10조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 중 “징수의 예에 의한다”를 “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</u></p>
<p><u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, 동법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, 폐기물관리법,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(이하 “시조례”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<u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<u>제2조(구청장의 책무) ①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</u></p>	<p><u>제2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----- 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--자원순환을 촉진하기 -----</u></p>

책무를 진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제3조(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서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장려금 등의 지급)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,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,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재활용추진협의회)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

-----.

② ----- 제1항에 따라 -----

----- 각호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

제3조(기본계획) ① -----

-----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-----

----- 기본지침과 관할 구역-----

-----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--.

<삭제>

제4조(자금 등의 지원) -----

법 제31조에 따라 -----

-----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-----.

제5조(재활용추진협의회) ① -----

촉진하기 위하여 시민, 단체,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(이하 “구 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회장·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협의회 회장·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·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<신 설>

----- 구민 -----

----- 서울특별 -----

시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-----

--.

② ----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지 11명 -----.

③ --- 위원장 및 부위원장 -----.

④ --- 위원장·부위원장 ----- 하며,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

⑤ ----- 범위 -----.

⑥ -----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 ----- 위원장 -----.

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

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 ·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회피 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 · 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(과태료 부과 · 징수 등) ① 구
청장은 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
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
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,
영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견
진술 절차를 거쳐 그 상대방에게
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
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
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입고지서
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
다.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
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
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

제7조(과태료 부과 · 징수 등) 구청
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
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
징수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
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·징수가 위법·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(변경)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견진술) 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, 이때에는 적어도 의견진술일 10일전까지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,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)
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

<삭 제>

<삭 제>

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
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
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
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
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자체없이
그 사실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과
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
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
하며,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
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과태료 수납부 비치·관리)
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
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
호 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
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과태
료 부과·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
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
예에 의한다.

제12조(과태료의 귀속) 과태료는 구
수입으로 하되, 비송사건절차법
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
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.

제13조(규칙제정) 이 조례의 시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
정한다.

<삭 제>

제11조(준용규정) -----

----- 체납처분의 예
에 따른다.

<삭 제>

제13조(규칙제정) -----
---- 필요 -----
-.